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98 발의연월일: 2025. 4. 14.

발 의 자:서천호·김선교·김예지

최보윤 • 정성국 • 정희용

우재준 • 박덕흠 • 이달희

이만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4년 12월 20일 어선법의 개정으로 어선의 불법개조를 예방하고 어선건조업 등을 산업화하기 위한 어선건조·개조업 등록제가 도입되 었음.

다만,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어선건조·개조업체가 등록을 신청할 때, 등록기관에서 등록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하고, 어선의 불법 개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선건조·개조업자에게 부과되는 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의무 준수 여부를 해양수산부 등이 단속할 수 있어야 함에도, 해당 근거가 없는 상황임.

이에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와 해양수산부 등이 어선건조· 개조업자의 어선 불법 개조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, 어선건조·개조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(안 제37조의2, 제39조).

법률 제 호

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2제2항 중 "어선중개업자"를 "어선중개업자 및 어선건조·개 조업자"로 한다.

제39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3.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·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의2(위반행위에 대한 지도	제37조의2(위반행위에 대한 지도
· 단속 등) ① (생 략)	· 단속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<u>어선중개</u>	② <u>어선중개업</u>
<u>업자</u> 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	자 및 어선건조・개조업자
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	
도·감독을 할 수 있다.	
제39조(수수료) ① 다음 각 호의	제39조(수수료) ①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	
양수산부렁 또는 특별자치시ㆍ	
특별자치도・시・군・자치구의	
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	
료를 내야 한다. 다만, 제40조제	
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	
업무를 위탁받은 기관(이하 이	
조에서 "수탁기관"이라 한다)이	
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	
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	
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	
(이하 이 조에서 "대행기관"이	
라 한다)이 총톤수의 측정ㆍ재	
측정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	
우에는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	
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	
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내야 한	

다.	
1. · 1의2. (생 략)	1. · 1의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의3.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
	따라 어선건조·개조업의 등
	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
	<u>자</u>
2. ~ 15. (생 략)	2. ~ 1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